

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우리은행

2. 조치일 : 2026. 6. 24.

3. 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개선사항 1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대출금리 우대를 위한 급여이체실적 관련 업무절차 개선 필요

우리은행(이하 '은행')은 급여이체 등 부수거래 실적에 따라 금리를 우대해 주는 약정을 가계대출 신청고객과 체결할 수 있다. 그 중 급여이체 실적 확인절차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고객의 이체 내역 중 '급여' 성격을 탐색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는 절차로서, 은행은 동 절차를 수행하면서 실적 충족 기준 등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고객이 동 약정에 따라 급여를 이체한다면 금리우대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

* ① 대량이체 등 급여 성격의 '코드'로 이체, ② 사전등록된 고객정보(직장명 등)와 일치하는 내역으로 이체 등

그러나 은행의 대출금리 우대 업무와 급여이체 관리 업무간 유기적 운영이 미흡*하여, 대출신청에 따른 급여이체정보의 등록시부터 대출이 실행되기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등 특정상황**이 발생한다면 고객의 실질적인 급여이체 여부와 상관 없이 금리우대가 적용되지 않을 소지가 있다.

- * ‘금리우대’는 대출실행부터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데 반해, ‘급여이체’는 등록으로부터 3개월간 탐색 후 미이체시 자동 삭제하고 있어 등록시점에 따라 금리우대 확인전 삭제될 수 있음
- ** 대출신청월에 고객이 제공한 급여이체 정보(직장명, 급여이체예정일, 계좌번호 등)가 등록되고 급여이체정보 등록월을 포함한 3개월간 급여이체가 없으며, 3개월 해당월에 대출이 실행되었으나 대출실행 익월에 고객의 직장명으로 급여가 이체되는 경우

따라서 은행은 금리우대를 위한 급여이체 실적 인정 업무에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하시기 바랍니다.